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김 성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1. 필요성 높아져가는 언론중재제도

가. 다매체 사회에서의 언론소비자 환경

현대 사회는 다양화 사회로 불린다. 인류의 사고나 철학적·학술적 범위뿐만 아니라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영역간의 교차범위 확대,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만을 별도로 생각해 볼 때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매체가 존재하는 '다매체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해 온 신문, 방송 매체를 뛰어넘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신문, 방송, 포털, 블로그 등의 등장으로 매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매체의 등장과 함께 찾아오고 있는 부작용이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이다.

더구나 인터넷 등 새로 등장한 매체는 파급효과가 엄청나 그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자칫하다간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의 이동이 시스템에 의하거나, 훈련된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뉴스의 전달자, 즉 '중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무의식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오늘날의 소비자는 과거와 같은 피동적 개념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 개념의 소비자로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근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도 단순한 수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로서 소비자가 아니라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로서 실질적 권익 실현에 목표를 두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권리가 점차 높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의 주변환경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용자들은 언론기관을 '제4의 권력',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대'로 보아오던 견해에서 벗어나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상업적 정보회사'로 간주하는 견해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소구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분석과정에서도 밝히겠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 전통적인 피해구제방식인 재판에 의한 것 보다, 우선 처리기간이 짧은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재판에 의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언론소비자 의식에 맞춰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언론환경을 살펴보고, 그동안 언론소비자 구제제도(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정, 통계를 통해 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과정, 그리고 언론소비자의 새로운 구제제도 및 공급자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

인류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나 활동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십년 전 만해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기나 글자쓰기 같은 기초적인 표현방법 외에 인간이 근대에 들어서 고안해 내기 시작한 신문과 잡지, 책자, 그리고 막 등장하기 시작한 라디오나 TV 매체가 고작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매체에 등장하는 인적 자원도 정치인이나, 연예인, 저명 인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매체에 표현된 정보는 한 방향으로, 게다가 문자를 터득하거나 일정한 교양을 갖춘 '소비자'[1]들에게 전달되는 범위

1) 여기서는 언론을 정보의 공급 개념으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은 보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언론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접근하며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은 첫째, 매체의 다양화 및 매체수의 증가이다. 기존 언론매체부터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는 종합일간신문 외에 수없이 많은 전문지, 주간지, 지방지 등이 생겨났고, 영상매체 역시 대형 라디오, TV 방송사는 차치하고라도 케이블TV, DMB, IPTV, 영화 등이 더 수용자와 밀착되어 있다. 혁명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보편화에 있다. '포털'이라는 공룡인터넷 사이트에서 1인 1개 시대를 맞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가 무차별로 공개되고 있고, 특히 UCC를 통해 동의되지 않는 초상권의 침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둘째, 언론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통제받지 않고 작성한 글을 보고 싶어하는 권리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제한적인 집단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희망하면서도 직접 나서는 적극적인 요구자의 입장을 갖지는 않았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수용하는 피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악법이 개정되고, 민주화를 근거로 한 새로운 법률이 어느 정도 제정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권리의식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나 파급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거 '언론권력'을 가급적 회피하려 했던 것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서슴지 않는 자세로의 전환을 가져 온 것이다.[2)]

셋째, 이러한 수용자 의식변화와 달리 언론의 시대적 변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점이다. 언론의 최대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기존의 언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도수가 많은 정보접촉 창구는 신문·방송 등 기존의 언론이 아니라 이제는 포털이나 블로그로 바뀐 것이다. 물론 포털의 정보는 기존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생각은 영리행위를 하는 포털이나 기존의 언론이

---

2) 임병국,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통권 제 71호, 1999년 여름, p. 211.

나 모두 똑같은 상업적 정보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언론기관은 최근의 언론 소비자들의 시각과 일치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 두 주체간에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즉 '갑'(甲)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외부로부터 끌어 온 'A'정보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소비행위라고 한다면 '갑'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매체에 접근하여 'A'정보를 검색하고 또 이를 끌어다가 다른 블로그로 전파할 경우 '갑'은 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공급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악용되었을 때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책임의 범위까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법 제정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언론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언론중재제도의 변천

다양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다양화 만큼이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법과 제도이다. 우리 사회를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구조로 한정해서 보면 소비자보호법을 필두로 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더 범위를 좁혀 '언론'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많은 법이 그동안 제정되어 왔다.

특히 여기서 논의할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언론제도는 그동안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언론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은 언론자유 확보, 언론민주화와 궤를 함께 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비난받아 온 '언론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언론민주화운동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탄생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또는 언론중재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언론중재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으로부터 그 개념이 출발하고 있다. 1980년의 언론 상황은 처참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숨지자 전두환 소장(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지휘관으로 한 합동수사본부가 공백상태의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1980년 들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군부에 의해 권력이 강화되어 가자 재야정치권과 언론은 5월 20일까지 민주화와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5월 들어 최고조에 이르자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돌연 확대 계엄을 발표하고 김대중 등 정치인 구속, 국회 해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계기로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자 10일 만에 이를 유혈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를 구성하는 한편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정권장악음모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해 8월부터 수 백 명의 언론인을 해고하는 소위 '언론대학살'과 12월 1일 신문사 및 방송사를 통폐합하는 '언론통폐합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그 해가 저물어 가던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을 발효시킴으로써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일련의 조치를 마무리했다.

언론기본법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公的)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언론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이야말로 곳곳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1980년대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언론중재제도 자체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언론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언론중재제도에서 사실상 '조정'에 불과한 역할을 하면서 '중재'라는 용어가 의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채택되어 사용되었고, 반론보도를 정정보도와 혼돈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

화국이 들어선 1989년 폐지되었다. 다만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조항을 통해 존속되고,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3]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각 분야에서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수용자단체들 사이에서도 언론관계법의 개정 또는 제정의 요구가 거세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공동으로 '언론개혁정책위원회(언개위)'를 구성하여 '수용자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민언론운동단체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언론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수용자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언론운동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4]이었는데 시민언론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언론학계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제기한 다른 요구는 '언론평의회' 또는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었다. '언론평의회' 제도는 영국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위상이 모호한 언론중재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등을 발전적으로 흡수하거나 재편성하는 형태로 도입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5] 그러나 언론평의회 제도는 정부기구가 아닌 수용자운동에 의해 구성된 민간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피해자에게 어떻게 확실히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또 다른 언론감시제도인 '옴부즈맨'제도는 수용자가 언론을 감시한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형식적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사(自社)의 홍보나 형식적인 비판을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

3)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제도로서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 법관 이외에 언론계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 7. 22. 결정 96헌바19)

4)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 :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대안 : 중재위원회는 …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 위원 5분의 2 이상은 언론계 및 시민언론단체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p.130-131.

5) 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p.130-131.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효율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중재제도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정간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는 등 언론중재제도가 강화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언론소비자의 본격적인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각 정당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4년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1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이 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인터넷 신문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구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 기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 면에서는 앞으로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의 변화

가. 변화된 언론중재제도

(1) 중재기능의 도입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은 제1조(목적)에서 "… 언론보도로 인하여 …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라고 규정하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제3절 제24조(중재) 제1항에 "당사자의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절차(2항, 4항)와 효력(제25조)

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질적 의미의 '중재' 기능도 함께 갖게 되었다. 과거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제로는 '중재' 가 아니라 '조정' 만 해 왔는데 이번 법의 제정으로 중재위원회는 종래의 조정 및 심의기능 이외에 중재기능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6)]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 '소송' 이 있다. 법률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법이자 강도가 높은 것이 '소송' 이다. 이 소송의 장점은 국가가 선임한 판사가 사전에 엄격하게 규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승패를 확실히 결정해주고(명확성),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복잡한 사건을 매우 적절하게 해결(완벽성)해 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소송절차가 엄격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법률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7)]

이러한 이유로 '소송 외 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들인 '협상', '조정', '중재' 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협상' (negotiation)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협상은 당사자끼리 분쟁 해결과정과 결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는 반면, 제3자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실패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조정' (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당사자들은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결정권한을 가지며, 제3자(조정인)는 협상을 도와주는 권한만을 가진다. 언론중재법은 직권조정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자체로 법원의 소송으로 자동 연결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중재' (arbitration)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제3자(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중재' 는 중재인이 쌍방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적인 중재판정(이른바 절반중재)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잘못된 중재판정에 사실상 불복할 방법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과 구분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통해 종국적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

6)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5권 1호(2005년 봄호). p.6.
7) 권혁남,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2006. 7. 5.

결국 '언론중재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8)]

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②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을 가급적 줄인다.

③ 당사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축소한다.

④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⑤ 비공개의 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⑥ 기존의 실체법 적용을 피하고, 일반 시민의 감각에 맞는 창의적인 실체규범을 창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인터넷 신문의 포함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제14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제16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제17조 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제30조 제1항)를 각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언론사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제2조(정의) 제10호에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는 제2조 제8호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거 정간물법의 개정된 법률명) 제2조 제5호(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전자 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따라 인터넷신문이 과거 정간법물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온라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8)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실무제요, 2005.

그러나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도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털의 경우는 피해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언론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문제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포함

과거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면서 물질적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까지 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심리기간이 최장 21일밖에 안돼 이를 해결하는데 촉박하다는 점과, 언론의 침해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없지 않다.[9)]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은 심의기간이 짧고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에게는 효율적인 피해구제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소액이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심의하기에는 기간과 전문성에서 극히 제한적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과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정간물법 제19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는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택하든 법원을 택하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9)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5권 1호(2005년 봄호) p.7-8.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언론관계 법률에 밝은 법조인과 경험이 축적된 언론인, 기타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법원의 상세한 절차가 필요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더욱 필요해졌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통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조정신청 추세의 변화

지난 1981년부터 언론중재제도가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벌써 26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언필칭 언론피해구제를 명분으로 해서 출발하였지만 초기였던 1980년대 전반에는 군부독재정권의 시대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조정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1〉은 연도별로 조정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 피해구제율을 정리한 도표이다. 조정신청 건수의 증가율이 도표로는 실감나지 않지만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년 등 5년 간격으로 조정신청 건수 증가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11.4%, 349.0%, 152.7%, 18.5%, 64.9%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1년의 조정신청 건수와 2006년의 조정신청 건수를 비교하더라도 증가율이 64.9%나 되었고, 2006년에는 연간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1995년까지는 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조정'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의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신청인의 '취하'를 조건으로 '속보' 및 'PR기사 게재'로 피해구제를 높이는 방법을 구사하였다. 피신청인인 언론기관으로서도 자신의 매체에 '정정'이나 '바로잡습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일부 신청인들은 언론기관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신청인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불성립이 됐을 때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취하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전반적인 피해

구제율은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직권조정결정권이 중재위원회에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표1〉 연도별 조정신청건수 및 처리결과와 피해구제율

연 도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 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1	2	20	16 (39.0)
1982	50	19			19		2	10	28 (58.3)
1983	71	21			22	1	1	26	36 (52.2)
1984	54	12			29	3		10	25 (49.0)
1985	59	12			28	4		15	24 (43.6)
1986	49	14			10	1		24	27 (56.3)
1987	47	10			9	1		27	16 (34.8)
1988	55	16			12		1	26	34 (63.0)
1989	121	29			35		6	51	60 (52.2)
1990	159	42			43	1	2	71	92 (59.0)
1991	220	52			48	3	1	116	104 (48.1)
1992	381	81			79	19		202	200 (53.8)
1993	423	132			96	8	2	185	232 (56.2)
1994	541	162			127	7		245	300 (56.2)
1995	528	111			150	26	3	238	260 (52.1)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290 (53.1)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293 (61.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356 (59.6)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366 (59.8)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376 (63.6)
2001	659	229	6	23	132	18	2	249	398 (62.3)
2002	511	182	18	17	62	8	1	223	313 (62.4)
2003	724	287	15	15	101	27	3	276	472 (68.0)
2004	759	283	46	22	140	13		255	495 (66.4)
2005	883	334	31	20	181	19	15	283	53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2	13	413	637 (60.6)
계	10,321	3,351	192	180	2,074	242	66	4,216	5,980
%	100	32.5	1.9	1.7	20.1	2.3	0.6	40.9	59.7

한편 최근 분석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신청내용을 청구권별로 분류한 〈표2〉에 의하면 2005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이후로 전체 신청건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정정보도가 60%에 가까웠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69.5%나 됐다. 그러나 2005년에는 평균치(59.0%)와 비슷한 수준(60.1%)에 머무르더니 2006년에는 평균치보다 적은 50.2%로 크게 떨어졌다.

〈표2〉 최근 7년간 청구권별 조정신청 추이

연 도	정 정	반 론	추 후	손 배	계
2000	368 (60.6)	211 (34.8)	28 (4.6)		607
2001	418 (63.5)	221 (33.5)	20 (3.0)		659
2002	307 (60.1)	201 (39.3)	3 (0.6)		511
2003	503 (69.5)	216 (29.8)	5 (0.7)		724
2004	414 (54.5)	301 (40.0)	44 (5.8)		759
2005	531 (60.1)	194 (22.0)	17 (1.9)	141 (16.0)	883
2006	546 (50.2)	211 (19.4)	12 (1.1)	318 (29.3)	1,087
계	3,087 (59.0)	1,555 (29.7)	129 (2.5)	459 (8.8)	5,230

반면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법 시행 첫 해인 2005년에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16.0%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29.3%로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겨우 2년간 시행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에는 조정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언론피해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년 간격으로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 신청인은 점차 줄어들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피하려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표3〉 조정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 유형	1990년	2000년	2006년
개 인	98 (61.6)	340 (56.0)	529 (48.7)
회사(기업체)	25 (12.7)	68 (11.2)	127 (11.6)
국가기관		17 (2.8)	151 (13.9)
공공(기관)·단체	12 (7.6)	19 (3.1)	15 (1.4)
지방의회/자치단체		25 (4.1)	30 (2.8)
정 당		2 (0.3)	
조합 및 협회		51 (8.4)	46 (4.2)
일반단체	12 (7.6)	43 (7.1)	126 (11.6)
종교단체	6 (3.8)	13 (2.2)	9 (0.8)
교육기관	5 (3.1)	11 (1.8)	35 (3.2)
종 친 회	1 (0.6)		
기 업 체			
언 론 사		14 (2.3)	17 (1.6)
의료기관		4 (0.7)	
금융기관			2 (0.2)
계	159	607	1,087

또 하나 특징은 언론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하려는 집단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론민주화 이후 언론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정신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경제인, 전·현직 공무원, 정치인 순서이며 학생 주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인이 많다는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에 약하다고 이야기되던 공무원에서부터 주부까지 있는 것은 앞서의 지적처럼 언론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4〉 조정대상 매체 유형별 분석

매체군	세부매체별	1981년	1990년	2000년	2006년
신 문	중앙일간지	27 (61.4)	67 (42.1)	176 (29.0)	353 (32.5)
	지방일간지	7 (15.9)	40 (25.2)	148 (24.4)	245 (22.5)
	주간신문	2 (4.5)	17 (10.7)	113 (16.6)	125 (11.5)
방 송	TV	2 (4.5)	11 (6.9)	115 (18.9)	187 (17.2)
	라디오	0	2 (1.3)	9 (1.5)	5 (0.5)
	케이블TV	0	0	1 (0.2)	24 (2.2)
잡 지		2 (4.5)	20 (12.6)	23 (3.8)	54 (5.0)
통 신		4 (9.1)	2 (1.3)	17 (2.8)	17 (1.6)
인터넷신문		0	0	0	77 (7.1)
기 타		0	0	5 (0.8)	0
계		44	159	607	1,087

〈표4〉는 신청인들이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로 10년 간격으로 4개 연도치를 비교한 결과 큰 흐름으로 볼 때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청구대상 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TV와 인터넷신문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방일간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TV와 인터넷이 현대 미디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구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언론조정신청 처리결과 분석

지난 25년간 조정신청한 건수 중 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의 맨 우측 피해구제율은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피해구제율은 우선 '합의'된 건수와 직권조정결정 가운데 '동의'건수, 그리고 '조정결정중 이의', '취하', '조정불성립'된 건수 가운데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처리된 건수를 합쳐서 기각이나 각하건을 제한 전체 신청건수로 나눠 산정한다.

이 피해구제율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에는 5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50%대에 머문 경우도 몇 차례 있었으나 대략 60%대에서 정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구제율이 60%대라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언론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그 처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2006년을 기준으로 매체유형별로 처리 결과와 피해구제율을 정리한 것이 〈표5〉이다.

〈표5〉 조정대상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매체군	세부매체별	청구건수	합 의	직권조정 결 정	조정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피해구제율 (%)
신 문	중앙일간지	353	120(34.0)	17(4.8)	70(19.8)	7(2.0)	7(20.0)	132(37.4)	64.6
	지방일간지	245	72(29.4)	7(2.9)	37(15.1)	2(0.8)		127(51.8)	63.0
	주 간 신 문	125	41(32.8)	10(8.0)	24(19.2)	4(3.2)		46(36.8)	57.0
방 송	T V	187	50(26.8)	14(7.5)	58(31.0)		4(2.1)	61(32.6)	43.7
	라디오	5	2(40.0)		2(40.0)	1(20.0)			50.0
	케이블TV	24	5(20.8)	3(12.5)	6(25.0)	1(4.2)	1(4.2)	8(33.3)	68.2
잡 지		54	26(48.1)	4(7.4)	15(27.8)			9(16.7)	48.3(시사주간지) 80.0(월간지)
통 신		17	6(35.3)		1(5.9)	2(11.7)	1(5.9)	7(41.2)	92.9
인터넷신문		77	34(44.1)	2(2.6)	13(16.9)	5(6.5)		23(29.9)	72.2
계		1,087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60.6

〈표5〉에 의하면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은 피해구제율이 60%내외인데 반해 TV와 라디오는 43.7%와 50%로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케이블TV(68.2%), 통신(92.9%), 인터넷신문(72.2%)은 다른 매체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언론중재제도에서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정 방안

가. 인격권 침해 사례의 확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언론소비자의 의식제고로 '인격권'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인격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을 의미한다.

언론으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정이나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고, 승소하였을 때 공표청구 등을 하며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기간에 신청된 사건은 거의 전부가 명예훼손(신용훼손 포함)사건으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신청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권(신용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건수의 1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언론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높은 피해구제율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격권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가에 대해 논한 뒤, 실제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0)]

(1) 인격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

---

10) 김동하(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 제4중재부장),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2007. 9. 6.에서 인용함.

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언론중재법과 민법 기타 앞서 본 실정법들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인격권의 주체는 태아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자연인은 인격권을 가지며, 생명·자유·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대화에 관한 인격권, 정조에 관한 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명예, 초상, 성명, 저작물 및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관리권,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퍼블리서티권 등의 경우 법인, 조합, 단체까지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고 언론사가 이니셜이나 음성변조로 언론피해자의 특정을 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자료화면 등 주위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이나 청문회에 출두하면서 스스로 포즈를 취하거나 TV카메라 앞에서 친근하게 웃는다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그러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공개할 경우는 위법에 해당한다. 또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 보도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이 어느 정도 침해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악의적인 보도나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의 보도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명예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내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하는 명예 감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사실에 대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라디오 및 TV에 의한 뉴스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연예오락물 등, 일간·주간·월간지에 의한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논평·비평·사설·가십기사, 풍자·만평·독자투고·폭로·광고 등에 의한 경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인터뷰의 조건이 무시된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또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초상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를 말한다. 초상에는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합성 화면, 목탄 스케치로 작성한 인물화, 몽타쥬, 소묘, 풍자만화, 인형, 일러스트레이션, 커리커처 등 제한이 없다.

촬영거절권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것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만 공원, 스포츠 경기장, 시위 현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본인이 촬영을 의식하고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은 초상이 부수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 부분을 확대하여 배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

공표거절권은 본인의 동의없이 부정적인 보도와 함께 초상이 보도되는 경우 침해가 된다. 따라서 촬영에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표에 대한 승낙을 받아 놓아야 한다. 공표에 대한 승낙은 있었으나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공개

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므로 공표 자체뿐만 아니라 공표의 방법·목적에 대한 승낙도 반드시 필요하다.

초상영리권은 초상이 무단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때 초상권이 퍼블리서티권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상영리권은 주로 일반인들이 갖는 인격권의 개념이나 퍼블리서티권은 주로 유명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으로 침해시 위자료보다는 모델료 청구가 주된 관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초상권, 성명권 등 개별적인 인격권과 동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프라이버시권으로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남녀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 해당된다.

공중이 오해하도록 하는 공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명예훼손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공표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그 개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5) 퍼블리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예술가 등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성명, 초상, 기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격적 요소가 본인의 승낙없이 또는 계약범위를 넘어 광고나 달력, 카드 등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생기는 침해를 말한다. 언론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격권 차원에서 논의되

고 있다. 이는 재산권으로서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 것으로 그 권리를 양수한 타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허락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그 모습이 새겨진 상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정 공간이나 물품에 타인의 성명을 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퍼블리서티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방법 및 종류

(1)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적인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전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언론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침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조정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해 영업이 부진해졌거나 파산,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산정은 판례를 볼 때 기사의 내용과 크기, 피해자 측의 나이・성별・재산정도, 언론사 측의 발행부수・공신력 등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악의, 의도적 무시, 고의성 있는 경우 장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손해배상 신청액의 비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재판을 통하는 방법과 2005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됐다. 두 청구방법은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결정의 시간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3주 이내에 조정 및 중재를 결정하는 초스피드 결정방식이지만 재판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입증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결정액도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 말고도 정정 또는 반론, 추후보도가 함께 수반되는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만을 입증의 근거로 삼고 결정액도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에 소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 재판의 일차적 여과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재판은 침해의 경중을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 양쪽 모두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다르고 결정액 역시 고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김동하 부장판사가 법원의 판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사례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 판례는 1천만원 이하는 22.6%에 불과하고 1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에 59.7%가 몰려있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조정액은 1천만원 이하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음성권 침해 역시 언론중재위에서는 1천만원 이하에 100% 조정되고 있는 반면, 판례에서는 초상권의 경우 1천만원 이하가 71.4%,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이 28.6%를 차지하고 있고, 프라이버시권은 1천만원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크게 비교가 되고 있다.

(4) 손해배상 신청내용의 비교분석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언론침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미니스커트를 입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벚꽃 구경을 하는 회사직원들의 모습을 연인관계로 오인하게 끔 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된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그리고 액수를 정리한 것이 〈표6〉이다. 표의 손해배상액수를 비교하기 위해 맨 왼쪽 칸에는 단계별 손해배상액수를, 중간에는 법원 판례의 내용과 액수를, 오른쪽 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조정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표7〉은 초상권 침해 관련, 〈표8〉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관련, 〈표9〉는 음성권 침해와 신용훼손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청구한 액수는 명예훼손의 경우 3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2억원, 프라이버시 침해는 500만원에서 1억원, 음성권 침해는 100만원에서 3,000만원, 신용훼손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조정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표6〉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1		9	- 당구장 가스폭발로 공덕동 재래시장 화재발생(50만원, 100만원) - 청학동 무허가 사당 난립 관련 인터뷰(100만원) -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자살 단정보도(100만원) - 아파트에 숨진 아버지 3일간 방치(반론 및 100만원, 100만원) - 지하철에서 말다툼 동영상 불리하게 편집(기사 삭제 및 150만원) - 호화주택에서 사치생활하는 양부정적으로 방영(150만원)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		7	- 유명 대학출신자 아르바이트직 전전 월세 내기도 벅차다고 보도(200만원) - 4년 전 여성잡지 기고문을 최근 호에 무단전재, 직접 기고한 양 보도(알림 및 200만원) - 강도짓 보도, 검찰 무혐의 처분 받음(200만원) - 수사경찰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당사자인 양 보도(300만원) - 빚 독촉 친동생 엽기살해 보도 후 무죄판결(후속보도 및 사건별로 150만 - 550만원까지 5건)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4		2	- 교제 여성에게 임신, 유산 요구 폭행했다고 허위 보도(정정 및 500만원)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5		3	- 안산시 공무원들이 특혜행정 허위보도(1,000만원) -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중 포스코 직원들과 식사하며 심하게 다뤘다고 허위보도(정정 및 1,500만원) - 부모로부터 숙제 안했다고 꾸지람 듣고 자살했다고 허위보도(정정 및 1,500만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3	- 육영수 여사 살해범은 청와대 경호과장(2,500만원) - 뉴스위크 주간잡지 초상권 침해(3,000만원) - 김일성 장례식 참석한 ooo(3,000만원) - 김해군 부면장 창고 불법임대(3,000만원) - ooo의 호화사교클럽 물의(3,000만원) - ooo이 김형욱에게 아부(3,000만원) - 변태 성행위 연극(3,000만원) - ooo검사 이씨 비망록 은폐(3,000만원)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	-국사모, 국정원자료 정형근에 제공(3,000만원) -박지원, 김재기로부터 2억 수령(3,000만원) 등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	-임채정은 중정 출신(5,000만원) -이종찬 운동원 조폭 일원(5,000만원) -화가 작품 오리지널 판화로 속여 전시(5,000만원) -현승종은 친일파(5,000만원) -ooo 20세 연하 여동생 딸 소문(6,000만원) -ooo사례비 보도(뉴스데스크 4,000만원 +PD수첩 3,000만원)(7,000만원) -중학교장 집단 괴롭힘 방치(7,900만원)		
1억원이상	4	-OOO검사 납득못할 영장기각(1억만원) -백지연 이혼배경(1억만원) -DJ는 용공 친북인사(초상권침해 포함)(1억 2,000만원) -한약업자, 김현철에게 정치자금 전달(4억원)		

〈표7〉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24	-추위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30만원 중재) -재테크 모임 소개 시 실명 및 사진(30만원) -인터넷 해지 업무 무관 직원 방영(49만원) -이직 기사에 서점서 책고르는 모습(50만원)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 상의노출 달리는 모습(50만원, 무료구독 1년) - 단역 배우 프로필 사진을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60만원) - 쇼핑요령 보도시 홈페이지 사진 무단 게재(60만원, PR기사) - 댄스대회 과다노출 춤 장면(70만원) - 살인 피해자 가족 우는 모습(80만원) - 미니스커트 부정적 기사에 사진(90만원, 해당 신문 평생무료구독, 자매 월간지 1년 무료구독) - 미니스커트 차림 걷는 모습(약 100만원 내외 현물 지급) - 대학축제 펀치왕 주먹 휘두르는 모습(100만원) - 옷차림 부정적 기사 뒷모습(현물 지급) - 음료수 마시며 걷는 모습, -인터뷰 회피자 촬영 및 방영, 뇌졸중 기사에 얼굴 사진, -서해대교 사고 피해자 모습 및 음성 방영, -프로포즈 받고 우는 모습, -누드크로키 모델 사진 게재(이상 100만원) - 산 오르는 모습(100만원 중재) - 옷가게에서 커피 쏟는 장면(115만원) - 동료와 벚꽃 길 걷는 모습(150만원) - 가출 청소년과 모친 상면 장면(150만원 중재) - 생선 절도 초상 및 음성 보도(150만원)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2	- 도주차량 체포 및 인터뷰 장면, 동의범위 넘어 사용 (200만원) - 연주자들 식별 불가 조건 위반(200만원)	9	-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모습,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 -성폭행 피해자 CC-TV모습 방영, -납치피해자 CC-TV 모습 방영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 -동물사육 부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정 기사에 애완동물 가게 운영자 사진,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 척결대회 무산 보도 시 시설 근무자 사진 게재(200만원) - 이혼 위기 넘긴 노부부 사연 소개시 사진 방영 및 불륜 당사자로 묘사(250만원 중재) - 성전환 수술 전후 사진 소개(280만원) - 구의원 실종사건과 무관한 자의 얼굴과 유세차량 방영(300만원)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3	- 임수경 결혼식 장면(500만원) - 상부한 시집 발행인의 방영내용을 보험회사 직원교육용으로 판매(500만원) - 한혜숙 사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800만원)	6	- 주정차 단속요원 폭행자 초상과 차량 번호판 사진 게재(200만원, 700만원) - 현상범 포스터에 사진 싣고 강간 미수범으로 방영(500만원) - '된장녀' 기사에 초상, 성명 공개(500만원, 700만원 중재)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자모습 방영(500만원) - 나뭇가지로 두개골 골절상 피해자가 승소한 사연 소개하면서 사진과 실명 공개(700만원)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	- 압구정동 오렌지족 사진(1,000만원) - 앵커출신 중견 방송인 OOO의 음주단속 현장(음성권 침해 포함)(1,500만원)		

〈표8〉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3	- 폭행 피해자 신원공개(70만원 중재)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 비만도 조사 모델에 응한 자를 비만체형 독자모델로 소개하여 비만정도 공개(100만원) -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보도(150만원)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	- 현재 거주지 노출(200만원) - 성폭행 피해자 나이·성 보도(100만-300만원) - 탤런트와의 사생활 보도시 인적사항 공개(300만원) - 방송 출연자 과거 사생활 노출(300만원 중재)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3	- OOOO이 여자 탤런트와 열애 중(명예훼손 및 500만원) - 장인이 사위와 딸 혼인신고하여 그들 신세 망쳤다(명예훼손 및 500만원) - 신입생 환영식 촬영(초상권 및 600만원)	1	- 자궁내막증 수술 장면 및 음성 변조 없이 방영(750만원 중재)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4	- 의사에 반해 이혼을 주 내용으로 한 기사(1,000만원) - 변호사 상대 승소과정 수기(명예훼손 및 1,000만원) - 유방수술 후유증 피해자 옆모습 방영(초상권 및 1,000만원) - 고액과외 여전 관련 연습실 촬영(초상권 및 1,000만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2	- 미스코리아 출신 미혼 여성이 전경환과 부도덕한 관계(2,000만원) - 전지현 소속 회사 대표와 결혼 예정(3,00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	- 백지연 대 최 OO 기자(명예훼손 및 1억원)		

〈표9〉 기타 음성권 침해와 신용훼손과 관련한 판례와 조정 내용 및 손해배상액

금 액	법 원		언론중재위원회	
	건수	사례 및 액수	건수	사례 및 액수
50만원 ~2백만원미만			6	〈음성권 침해〉 -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과 관련 전자 팔찌 반대한 2005년 인터뷰 내용을 방송 -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도하고 음성 방송 - 주유소 유사 휘발유 판매 관련 인터뷰내용 방송 - 퀵서비스 업체 임금 체불 보도시 회사 직원의 음성 방송 - 어린이 유괴사건 취재시 범인의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계업자의 음성과 사무실 내부를 촬영 및 방송(이상 100만원) - 프랑스마을 영아 사체 유기 사건 보도시 용의자의 회사 동료의 음성을 변조없이 방송(100만원, 100만원 중재)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	- 신분증 위조사건 보도시 음성변조 없이 방영(200만원) 〈신용훼손〉 - 퀵서비스 업체 임금 체불 보도시 회사 상호 노출(250만원) - 이동통신 대리점 횡포 보도시 대리점 전경보도(정정 및 3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1	- 남녀 치정관계 보도시 무관한 피아노학원 전경 방영(1,000만원)

다. 언론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단점과 장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은 그 액수가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신청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에서 재판의 경우는 판결액이 1억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인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③ 언론보도로 인한 조정신청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재판과 비교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언론중재부의 조정이 인간적 화해로 이루어져 마무리가 말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조정에 의한 피해배상 액수가 낮아 언론사가 인격권 침해를 남용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⑥ 언론사에 대한 피해액 청구가 낮아, 자칫 법원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법원이 피해배상액수를 높이는 이유는 법원 외에는 언론횡포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언론사의 경제적 규모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원상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언론사에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고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액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중재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조인과 경륜을 가진 언론인,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언론사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액수를 산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둘째, 언론중재제도가 어차피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고액의 조정을 지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추세가 손해배상이 포함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여하에 따라 현재 60% 수준인 피해구제율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결 론

언론중재제도의 출발은 언론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민주화 사회가 된 현재는 언론 소비자를 위해서 신속하고 즉효적인 결론을 내리는 제도로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었다.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한류를 운위(云謂)하고 있는 것은 한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역시 외국에 확산될 수 있는, 언론소비자를 위한 '한류'가 되느냐 마느냐는 결국 활발한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끊임없이 수정해가야 하겠지만 성공의 지름길은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이용도와 피해구제율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 분석에서 보았듯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재 및 조정과정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운 보도에서 위축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위축은 곧 소비자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언론중재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피해구제율의 증가이다. 초창기 피해구제율이 40%대였던 것과 비교하여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반론보도 청구에서 조정성립률은 평균 39.3%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율(형식적으로는 취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취하의 경우

를 포함한 것임)은 평균 68.6%에 달하고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조정성립률 31.2%, 피해구제율 59.8%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상당수의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평면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재위원들이 법조 언론 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조정전치의 범위를 좀더 넓혀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11)]

둘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2년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해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함께 언론중재제도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진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언론소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언론중재제도가 보완해 나갈 과제도 없지 않다.

첫째, 언론피해구제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억울한 기분에서 울컥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상당수가 쉽게 취하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미한 취하로 신청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재제도마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배상액이 높은 재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론도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언론사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언론자유가 위축되었다고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인의 배치와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전에 손해배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고충처리인-언론중재위 협

---

11)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5권 1호(2005년 봄호) p.10.

의 등을 통해 그 보도의 선에 합법성을 강화한다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한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사도 관행적 권위의 등 뒤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버리는 한편 언론소비자의 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취재 및 보도방법을 개발하여 언론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것도 오늘날 언론의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된 문제점을 보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타인의 개인적 정보를 지나치게 추가하려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피해구제의 매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터넷신문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포털과 블로그 또한 언론피해를 가져오는 매체 중 하나이나 이의 포함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 형편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스피드 사회이다. 정보는 급속도로 이동하는데 침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는 거북이걸음을 한다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갈등은 고래로부터 있어 왔고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양해진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할 환경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발전의 속도에 제동을 걸지 않고 법과 제도로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는데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격체,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동의하는데서 가능해지리라고 믿는다. 그 존재는 바로 언론소비자, 언론공급자, 조정자들이기 때문이다. □